손해배상(국)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 [2심]	사건유형	손해배상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외 1명
판결선고일	[2심]2020. 4. 22. 항소기각	비 고	[1심]2018. 10. 17. 원고패 [2심]2020. 4. 22. 항소기각(원고패)
사건개요	❍ 2015. 3. 26. 인천○○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이 있었고 원고 회사가 점검대상으로 선정되어 학교급식팀 주무관 외 5명으로 구성된 위생점검단이 회사를 방문하였음. 방문당시 창고에 보관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잼통조림이 적발되었으나 원고는 담당 공무원이 단순보관인지, 판매목적인지 묻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며 소를 제기함.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 피고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현장 위생점검과 그 후속 조치 및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인정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심 판결요약	❍ 판매목적의 판단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제품들이 발견된 장소(물품보관창고), 이 사건 제품들의 수량(사과잼 5개, 포도잼 3개), 유통기한 경과 기간(사과잼 29일 경과, 포도잼 7일 경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담당 공무원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함. - 원고로서는 행정처분 이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고,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음. ❍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 증인의 증언에 따라, 피고 인천광역시 담당공무원은 원고에게 행정조사의 목적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됨. - 교육감이 학부모들을 위생점검단으로 위촉하여 위생 점검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위생점검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증인의 증언에 따라, 담당공무원을 비롯한 위생점검단원들은 그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원고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인천광역시 담당공무원이 출입, 검사 등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음.
2심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